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12. 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의견에 대한 회신(안 제8조)

❍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추진에 있어 주민의 참여 방법을 확대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제4호에서는 3개로 분산되어 있는 각 조례에 해당하는 용어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개정하고 단순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용어의 정비와 함께 제5항에서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공청회 참석을 통한 의견 진술 및 의견 제출 방법을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 등을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신설하여 주민 참여 방법의 확대와 알 권리를 규정하였음.

❍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제정한 조례로, 2023년 3월 2일 전부 개정 이후, 2023년 3월 21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“광역계획”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여 각 계획 간 상호 연계를 위한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이 있었기에 상위법에 의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.
- 아울러 안 제6조 “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”에 따른 안 제8조의 “주민참여 등”의 개정과 신설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의 구체화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을 시행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안전 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공공 목적의 실현에 가까운 규정이라 판단됨.
-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453	관 련 번 호

제안연월일: 2024. 11. 21.
제 안 자: 이예찬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❍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인 관리로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계획 수립·변경에도 공고, 홈페이지 게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현행대로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❍ 안 제3조제2항은 현행대로 하고,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제1항·제2항으로 하되 조문내용 중 “진흥”을 “지역”으로 수정하고, 안 제8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되 조문내용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수정하고, 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은 현행대로 하고,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제1항·제2항으로 하되 조문내용 중 “진흥”을 “지역”으로 수정하고, 안 제8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되 조문내용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수정하고, 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·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,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미	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전에	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미

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.	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	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	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출된 제안의 ---------- ----------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---------- 알려야 -------.	③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④ ------ 지역계획--- ---------- ---------- 개최하여 지역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

		에게 알려야 한다.
<신 설>	⑤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	⑤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<신 설>	⑥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	⑥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		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

		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4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, “유니버설디자인”,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의 용어정의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 각 2조에 따른다.

제6조의 제목 “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”을 “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“진흥계획””을 ““지역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”을 “추진방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진흥계획을”을 “지역계획을”로,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”로 한다.

2.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

3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

4.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산

5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

6.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”을 “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각각 “지역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⑥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

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문”을 “의견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관한 다음 각 호의”를 “관한”으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디자인업무 소관 국장”을 “공공디자인 업무 소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유니버설・사회문제해결・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, 조경, 건축, 실내건축, 도시계획,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

제15조제4호 중 “제14조 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자문을”을 “의견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유니버설디자인”이란 성별, 연령,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.	4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, “유니버설디자인”,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의 용어정의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 각 2조에 따른다.
5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	<삭 제>
6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.	<삭 제>
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. 공공디자인의 구축·관리 및 영역별·권역별·지역별·가로별·공공시설물별로 종합적·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.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.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.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	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-----“지역계획”----------. ② ---------- 지역계획----------. 1. ---------- 추진방향 2.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 3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 4.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산 5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6.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삭 제>

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
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 지역계획을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7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(이하 “가이드라인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7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---------- 지역계획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지역계획---------- ----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진	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지

흥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.	역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③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2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.
<신 설>	⑤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<신 설>	⑥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

	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<신 설>	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제9조(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)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 ④ ~ ⑧ (생 략)	제9조(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) ① ------ 지역계획----------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의견-------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----- ------ 관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둔다.
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--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----------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도시계획, 건축, 조경, 토목, 구조, 교통, 인문·사회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, 사회문제해결디자인, 유니버설 디자인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다. 유니버설·사회문제해결·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, 조경, 건축, 실내건축, 도시계획,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15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	4. ---- 제14조제1항 ----------
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.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의견을 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53

발의연월일: 2024.11. .

발 의 자: 유승용·최인순·이순우 이성수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절차 및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회신에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및 의견에 대한 회신 (안 제8조)

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한 본문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4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, “유니버설디자인”,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의 용어정의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 각 2조에 따른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,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”을 “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“진흥계획””을 ““지역계획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”을 “추진방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진흥계획을”을 “지역계획을”로,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

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”로 한다.

2.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

3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

4.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산

5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

6.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”을 “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각각 “지역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”를 “제출된 제안의”로, 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”를 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”으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, “개최하여”를 “개최하여 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②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⑤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

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진흥계획”을 “지역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문”을 “의견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관한 다음 각 호의”를 “관한”으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디자인업무 소관 국장”을 “공공디자인 업무 소관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유니버설·사회문제해결·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, 조경, 건축, 실내건축, 도시계획,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

제15조제4호 중 “제14조 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자문을”을 “의견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유니버설디자인”이란 성별, 연령,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.	4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, “유니버설디자인”,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의 용어정의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 각 2조에 따른다.
5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	<삭 제>
6. “사회문제해결디자인”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.	<삭 제>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 략)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·체계적·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.	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,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6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-----“지역계획”-----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 지역계획----------.
1.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	1. ---------- 추진방향
2. 공공디자인의 구축·관리 및 영역별·권역별·지역별·가로별·공공시설물별로 종합적·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	2.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·관리
3.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	3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
4.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	4.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 및 확

개선에 관한 사항	산
5.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	5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
6.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	6.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7.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③ ------ 지역계획을 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제7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(이하 “가이드라인”이라 한다)을 수립	제7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---------- 지역계획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하여야 한다.	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지역계획-----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·변경할 때에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.	제8조(주민참여 등)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,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게재시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,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제출된 제안의 ----------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---------- 알려야 -------.
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	④ ------ 지역계획----------

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	개최하여 지역 ----------.
<신 설>	⑤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<신 설>	⑥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
제9조(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)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9조(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) ① ------ 지역계획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의견----------.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----- ------ 관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둔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디자인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--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국장---------- ----------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도시계획, 건축, 조경, 토목, 구조, 교통, 인문·사회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, 사회문제해결디자인, 유니버설디자인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다. 유니버설·사회문제해결·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, 조경, 건축, 실내건축, 도시계획,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제15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- ----------

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위원이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	4. ---- 제14조제1항 ----------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1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.	④ ----------.